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북한인권백서}.
- 안드레이 란코프. 1995. 김광린 역. {소련자료로 본 북한현대사}. 오름.
- 이상우. 1997. "북한 정치체계의 이해." {현대정치의 이해}. 오름.
- 이원웅. 1996.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현대사회연구소.
- . 1997.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름.
- 장명봉. 1995.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본 북한인권". 최성철 편.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 한스 마레츠키. 1991. 정경섭 역. {영국국가 북한}. 동아일보사.
- 토마스 버젠틸. 1992. 양건 등 역. {국제인권법개론}. 교육과학사.
- 통계청. 1996. {남북한 경제사정 비교}.
- Brett, Rachel. 1995. "The Role and Limits of Human Rights NGOs at the United Nations," David Beetham, ed.. Politics and Human Right. Oxford: Blackwell.
- Claude, Richard and Burns Weston, eds.. 1992. Human Rights in the World Community: Issues and Ac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Dicker, Richard. 1995. "The Prospects for Effective Human Rights Monitoring: China, A Case Study." Kyung-Won Kim, ed.. The Rise of East Asia and the United Nations. The ROK Committee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
- Donnelly, Jack. 1989.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Falk, Richard. 1981. Human Rights and State Sovereignty. New York: Holmes & Meier Publisher.
- Forsythe, David P.. 1991.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Lexington, MA: Lexington Book.
- Gutto, Shadrack B. O.. 1993. Human and People's Rights for the Oppressed. Lund, Sweden: Lund University Press.
- Haas, Ernst. 1990. "Reason and change in international life: justifying a hypothesi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4, No.1 (Spring/Summer).
- Hannum, Hurst(ed). 1992. Gui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elgesen, Jan. 1990. "Between Helsinki- and Beyond? Human Rights in the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llan Rosas and Jan Helgesen, eds.. Human Rights in a Changing East-West Perspective. London: Printer Publishers.
- Huntington, Samuel. 1991. "Religion and the Third Wave."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 Krasner, Stephen, ed.. 1983. International Regimes. Cornell University Press.
- Monshipouri, Mahmood. 1995. Democritization, Liberalization and Human Rights in the Third World.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Mower, Jr., A. Glenn. 1987. Human Right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Greenwood Press.
- Pollis, Adamantia. 1991. "Development, Growth, and Human Rights: The Case of Turkey." David P. Forsythe, ed..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 Ruggie, John Gerald.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 war economic order," Stephen Krasner(1983).

북한과 인권을 위해 대화하기

정태욱 (영남대 법과대학 조교수)

1. 북한 인권문제의 접근의 어려움

북한의 인권문제는 양날의 칼과 같은 위험성을 지닌 문제이다. 한편으로 인권의 강조는 궁지에 몰려 있는 북한에 대하여 가혹한 추궁이 되어, 미국과 남한의 강경보수파들의 정치 공세를 북돋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접어두고 평화와 통일만을 얘기하는 것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궁핍과 부자유를 방관하고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을 옹호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위험을 회피하려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아무런 결실도 기약할 수 없는 일종의 패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박성을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우리 남한 사람들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예컨대 북한에서 정치적 억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남한의 정치적 인권에 대한 제약도 커질 수밖에 없으며, 반면에 북한에서 사회적 인권의 실현이 더욱 충실히 실현되면 될수록 우리의 사회안전망도 역시 보다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의 인권문제의 양쪽에 놓인 함정을 피하면서 인권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그에 대하여 우리는 최근에 북한과 유럽연합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의 대화로부터 무언가 시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미국의 인권외교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른바 ‘우리식 인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과는 인권을 위한 대화에 합의를 보았으며,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국제 정치역학 등의 문제를 접어 둔다면 바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접근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한다. 즉 인권문제의 제기가 ‘인권을 위한 대화’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그 대화의 정신을 “평등과 상호존중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다.

2.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대화는 곧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점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붕괴 내지는 변혁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게 된다. 이른바 저항권발동론, 북한민주화운동론 그리고 국제법상의 인도적 개입론 등이 그에 해당 한다.¹⁾

그러나 이는 모두 북한정부의 통치적 권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현재 한반도의 사정상 더 큰 위험과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물론 사태가 보다 악화되어 북한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 새로운 정치적 세력이 일정한 대표성을 획득하여 투쟁에 돌입하고 또 그로 인한 혼란으로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면 그 때에는 인도적 개입 등이 정당하고 또 필요한 것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 정부가 궁핍상태를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 국가기구가 여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그 정부의

1)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로는 졸고,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 『민주법학』(제20호, 200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3면 이하 참조.

대표성을 부인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북한의 통치질서를 존중하면서 인권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비록 적폐가 클지라도, 북한 주민이 성취해 온 역사와 북한 주민이 간직해 온 전통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과연 그들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온전히 감안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의식구조 하에서의 지원과 운동이 북한 주민을 참으로 인권의 주체로서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²⁾

그러나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곧 북한의 체제를 긍정하고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대화의 당사자로서 평등한 지위를 상호 승인한다는 것은 다시 인권의 보편적 관점에서 상호 애정 어린 비판을 하고 설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화라는 것은 단지 사교상의 수다는 아닌 것이다. 서로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기 위하여 마주 앉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낭비일 뿐 아니라 결국은 대화를 배반하는 정치적 술수로 이행하기 십상이다. 인권을 위한 대화는 단지 상대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며, 인류 역사가 성취해 온 보편적 가치에 대한 겸허함과 인권에 대한 헌신과 존중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대화의 규범

이렇게 하여 북한과 인권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고 할 때,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 나갈 것인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란, 우선 서로 상대방의 논리를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는 것이고, 또 상대방에게 나의 견해와 입장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견해와 입장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상대방으로부터 보충받는 것임을 기억하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가 단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류이다. 그런 대화는 은폐된 선전선동과 다를 바가 없다. 북한과의 인권을 위한 대화는 바로 우리의 인권상황도 아울러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상황에 대한 반성적 자세로서 북한에 접근해 가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북한에서의 인권이 수령에 대한 충성도에 의하여 좌우되는 취약성을 보인다면, 우리의 인권상황은 인권의 주장과 보호에서 금권적 지위에 의하여 좌우되는 취약성을 보인다는 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반성적 접근은 어느 일방이 인권을 독점할 수 없으며, 상호 인권을 존중한다는 겸허함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인권의 대화는 상호 우열을 가리는 승부가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이념에 대한 공동의 추구와 배움의 과정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남한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서 허덕이는 것 또는 정치적 자유가 극심하게 제약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남한의 도덕이 황폐화되고 인간이 상품화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은 바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상호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은 단지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발전을 위한 질정과 격려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 우선 이 쪽의 잣대가 아니라

2)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조차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미군철수를 꼽았고(좋은 벗들 통계조사 66.1%), 또 상당수가 남한에 비해 북한의 복지제도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위의 통계조사 24.5%)(좋은 벗들 엮음, 『북한 사회 -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정토출판, 2001), 118, 124, 136, 150면)는 사실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상대의 잣대를 기준으로 하여 얘기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기아와 정치적 억압을 지적함에 있어 그것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북한의 이념인 주체사상의 언어로써 얘기할 수 있어야 하며,³⁾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금권에 의한 인권의 제약상황에 대하여 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규범으로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상호공존의 인권개념

위와 같은 대화의 규범을 유의하면서 이제 대화의 내용인 인권에 대한 공동의제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곧 대화의 당사자들이 상호 납득할 수 있는 보편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 보편성은 어느 일방의 세계관의 확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관이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각 체제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무엇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⁴⁾

그 보편성은 서구 전통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구해질 수도 없을 것이며, 북한의 유일수령체제인 주체사상의 확장에서도 구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인간중심의 사상, 또는 수령체제가 강조하는 인민에 대한 애정과 복리의 증진은 충분히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개인의 존엄 및 법 앞의 평등과 기회 균등의 원리도 역시 보편성이 있다고 믿는다. 즉 필자는 남북이 서로의 이데올로기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인권을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인 것으로, 혹은 각 이데올로기의 공통적 구성부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인권의 하부구조인 사회체제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용을 전제로 한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수령중심의 유일체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의 관점에서 남한의 자유분방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도 또한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는 서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즉 그러한 체제이념을 근거로 인권을 규정하려는 시도도 삼가하고, 아울러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체제이념 자체를 타격하는 것도 자체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 체제이념이 인권을 무력화하는 그 지점에 가서는 인권을 수호하자는 것이다. 즉 인권을 각 체제이념의 과도한 질주를 제한하는 한계로서 이해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 인권의 범위를 가능한 좁혀서 이해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인권의 핵심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⁵⁾ 이렇게 상호 관용을 전제로 하되, 인권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어떤 지적과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북한의 체제에서 공동체와 무관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의 생존과 최저생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에서 사상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3) 북한의 헌법도 기본적인 인권에 대하여 제64조 제1문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6월 13일 브뤼셀에서 EU 집행부와 북한 정부 관리 5명 사이에 인권에 대한 탐색전적인 회동이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인권에 관한 기본원칙, 유엔인권기구, 유엔인권기구와의 협력 등에 대해 시각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2001년 6월 14일.

5) 이러한 접근에 관하여는 최근 서구의 지도적인 사상가의 한 사람인 존 롤즈의 인권관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 롤즈는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을 벗어나 이른바 권리주의적 국가들에서도 고유한 인권체제가 성립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롤즈의 인권개념과 국제관계론에 대하여는 롤즈, 『만민법』(장동진 책임번역, 이끌리오, 2000), 참조.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비판자들의 대우에 관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에서 개별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요구하기 어렵겠지만,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5. 북한의 기근과 식량지원의 문제

인권의 공동의제를 설정함에 있어 루즈벨트가 천명한 4대 인권 가운데 하나인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 즉 생존의 인권을 접어들 수는 없을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의 대기근은 북한 인권상황의 참담함을 응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기근이 어떻게 발생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북한의 자연조건의 불리함과 90년대 이후 빈발한 홍수와 가뭄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몰락 및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교역의 곤란 등 외재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체제의 실패라는 내재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곡물자급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또 일반적으로 기근의 발생은 단지 자연재해 탓만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센(Sen)의 연구가 밝혀 주듯이 기근의 방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점,⁶⁾ 그리고 같이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는 그와 같은 기근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식량난은 우연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실 북한의 대기근이 사회주의 경제의 부실함과 농업시스템의 결함 나아가 북한의 수령 중심체제의 무책임성에서 연유한 바 크다는 주장은 그 동안 많이 있어 왔으며, 그러한 추정은 일종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인권문제에서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대화의 정신에 배치된다.

기근을 논하는 데에 있어 체제의 결함과 집권자들의 무책임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기근해소를 위한 대화의 일환으로 제기되어야지, 체제의 부정과 비난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삼가야 한다. 예컨대 이른바 주체농법의 비과학성과 비효율성은 그것대로 지적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주체사상 및 북한의 통치이념의 관점에서도 인민의 생존과 복리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인도주의적 원조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인권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지 그것을 정치적 차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원조 식량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고, 또 그것이 체제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체제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식량을 원조하면서 북한의 농업시스템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연구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인권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 혹은 경제적 교류의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의 협상에 있어서 경제적 교류와 인도적 원조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물론 민간단체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원칙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각자의 정치적 도덕적 소신에 따라 사회참여를 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 혹은 공

6) 아마티야 센, 『자유로서의 발전』(박우희 역, 세종연구원, 2001), 221-2면 참조. 센은 나아가 기근을 정치체제의 비민주성과도 연계시키고 있다. 위의 책, 212-3, 233-4면 참조.

적인 기구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문제, 정치문제, 경제문제를 각각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적 문제는 인권의 보편적 이념에 따라, 정치문제는 평화와 공존의 이념에 따라, 그리고 경제문제는 상호 이익이라는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각기 접근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물론 협상에 있어 일괄타결의 기법은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어느 한 문제의 타결이 없이는 다른 문제의 타결도 자연시키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적 문제를 정치문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대화의 기반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점 남북 쌍방이 모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6. 인권과 평화

끝으로 얘기할 것은 평화의 문제이다. 역시 루즈벨트가 천명한 4대 자유의 하나인 공포 즉, 전쟁공포로부터의 해방은 그 자체가 인권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다른 인권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바로 한반도의 평화에서 구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3월, 뒤늦게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권규약의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 “공격적 전쟁, 특히 핵전쟁을 인류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인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한반도로부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확보하며,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⁷⁾

북한의 그러한 주장은 자신의 인권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대립의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는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⁸⁾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1994년의 북-미간 전쟁의 위기는 단지 일과성 해프닝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당시의 상황은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운명에 있어 삶과 죽음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이다.⁹⁾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와 2000년 조명록의 방미에 의한 북-미 공동성명 등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전쟁위험은 상당히 불식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되고, 부시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한반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¹⁰⁾

현재 북한의 군부 중심의 권위주의적 체제의 명분은 바로 전쟁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북

7)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시행에 관한 북한의 제2차 정기보고서」, CCPR/C/PRK/2000/24May2000 제32항.

8) 이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최근의 저작으로는 마틴 하트-랜즈버그, 『이제는 미국이 대답하라 -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당대, 2000.

9)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은, 돈 오버도퍼, 『두 개의 코리아』, 1998, 중앙일보사, 283-308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한편 보다 심층적인 분석으로는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평론, 1999 참조.

10) 흔히 폐리보고서에 대응하는 것으로 말해지는 아미티지(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보고서에는 외교적 노력의 실패시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나의 방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아미티지 보고서 -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장성민 책임편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리포트 - 부시정부 파워 10인의 최신 한반도 관련 보고서』, 252-2쪽. 한편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수송차단을 위한 이른바 “자위권발동”도 거론되고 있다. 위의 책, 250쪽. 한편 지난 5월에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의 설득 및 대북정책의 조율을 위해 방한한 아미티지는 헛별정책의 지지와 북한과의 대화의 재개를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 종래의 비핵화정책에 더하여 반(counter)핵화정책을 천명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는 소위 ‘불량국가’들의 대량 살상무기를 무력을 통해서라도 제거해 나갈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의 수령중심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는 전쟁의 위기를 빌미로 한 전체주의적 총동원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부권위주의 체제야말로 우리 남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회의 인권에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

우리 남한에게 6.25전쟁의 가해자는 북한이고 피해자는 남한이지만, 북한에게 6.25전쟁의 가해자는 미국이고 피해자는 북한이다. 우리의 현대사가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한 공포로 점철되어 왔다면 북한도 미국의 전쟁위협에 대한 공포로 점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인권상황이 바로 그러한 분단과 안보의 차원에서 가장 심한 왜곡과 축소를 보여 왔듯이, 북한의 혹독한 인권상황의 가장 큰 원인도 거기에 있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북한 인권에 대하여 논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의 확보, 그리고 북-미의 관계개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서는 얘기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분개하며 북한 체제의 혁파를 주장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가 혹한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미관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접어두고 단지 북한체제와 인권상황에 대한 비난에만 몰두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민주화와 인권의 신장에 도움을 주기보다 한반도와 북-미관계의 정치역학의 소용돌이 속에 오히려 악용되는 결과를 빚을지 모른다.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불이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정태옥

I. 서

분단 반세기가 흐른 지금 한반도의 정국은 다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핫별정책으로 상징되듯이 화해와 협력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의 대립 및 남한의 보수냉전세력의 거부감이 말해 주듯 긴장과 갈등의 흐름도 여전히 강력하다.

보수냉전세력의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의구심과 같은 군사적 차원이며, 둘째는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와 주민들의 고통을 지적하는 인권적 차원이다.

대북정책에 관한 비판에 있어서도 기성세대들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젊은 세대들은 인권과 정치체제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핫별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것은 주요 언론의 무책임한 비난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 그리고 그들이 부추겨 온 대중들의 피해의식에 주요 원인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저변에 넓게 깔린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과 북한 현실의 비참함에 대한 분노와 거부감도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은 화해하고 연대할 상대가 아니라 비판하고 제압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과 공존 및 협력을 추구하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은 길을 잘못 들어 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핫별정책이 아니라 북한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한 것이며, 화해와 협력보다 북한체제의 폭압성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개입과 비판은 무력적인 차원에서의 인도적 개입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론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지원과 인권개선요구와의 연계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사실 현재 북한 체제가 성공하였고 또 바람직한 체제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북한 체제의 문제와 인권상황은 바로 20세기 인류 역사의 한 비극으로 기록될 북한의 기근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 글은 이처럼 북한 체제가 실패하였으며,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은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긍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북한의 대기근 사태를 단지 자연재해의 탓이거나 농업시스템 정도의 부분적인 결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북한 체제의 근본적 결함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주의환기와 지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동의한다. 사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논한 글들의 거의 전부가 바로 그러한 차원의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그러한 주장을 새삼 반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오히려 그러한 기존의 논의에 단서(但書)를 불이고자 한다. 즉 북한체제의 개혁과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이들의 선이해(先理解) 속에는 북한에 대한 멸시와 자유주의의 우월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북한에 대한 비판도 북한 주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지배의 욕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경멸과 타자화(他者化)로써는 어느 누구의 인권도 개선시켜줄 수 없다고 보며, 진정한 연민과 동포애가 결여된 인권옹호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인간성의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예속과 굴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북한의 대기근과 체제실패

1. 대기근의 원인

북한 체제의 문제와 열악한 인권상황은 북한의 기근 사태가 상징적으로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북한의 자연조건의 불리함¹⁾과 90년대 이후 빈발한 홍수와 가뭄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몰락 및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교역의 곤란 등 외재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체제의 실패라는 내재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있다.²⁾

전자와 같은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에 본질적 하자는 없는 것이고, 국제적인 협력만으로 충분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하여, 후자의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의 변화가 없는 무조건적인 협조와 지원은 단순한 대중요법으로서 잠정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곡물자급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³⁾ 또 역사적으로 발생한 기근이 단지 자연재해 탓만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기근은 사실 그 예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점⁴⁾, 그리고 같이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는 그와 같은 기근이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식량난은 우연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실 북한의 대기근이 사회주의 경제의 부실과 농업시스템의 문제⁵⁾ 나아가 북한의 권위

- 1) 북한의 전면적의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해발고도가 400미터 이상이며, 위도 상으로 북쪽에 위치하여 평균기온이 낮고 서리 내리는 기간이 길어 작물의 생육에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다. 한편 북한지역은 쌀보다 감자 농사가 더 적격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농무(農務)관인 스티머스는 지난 5월 북한농업실태를 들러 보았다. 북한의 기후는 감자에 보다 적합하다고 인식되고, 북한과 네덜란드는 씨감자생산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앙일보, 2001.7.17자 9면(10판)
- 2) 이러한 구분은 송두율 교수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송교수는 “북한이 현재 맞고 있는 경제위기는 식량위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북한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자연재해(이상기온, 홍수, 해일 및 가뭄)로 보는데 반해, 남한과 국제기구의 농업전문가들은 자연재해도 한 요인이지만 이보다는 북한농업의 ‘구조적’ 문제(농민의 생산의욕 저하, 육종기술의 낙후, 비료와 농약 생산의 정체 등)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자연재해’에 남한과 국제기구는 ‘인재’에 각각 분석의 역점을 두고 있다.” 송두율, 『21세기 와의 대화』, 한겨레신문사, 1998, 95쪽. 송두율 교수는 그 양쪽의 관점을 모두 감안하여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식량난의 원인을 정치체제와는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 보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북한의 기근을 단지, 자연재해 탓으로 보지 않음은 물론, 농업분야만의 시스템하자로도 보지 않고, 정치체제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결국 북한의 비극적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가뭄과 홍수 때문이 아니다. 정작 규탄되어야 할 것은, 세상 모든 곳에서 그 비효율성이 입증된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에 완강히 만족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정부의 태만, 그리고 매일같이 북한 주민들을 육체적 정신적 압제 속에서 마비시키고 있는 그들의 정치적 통치 방식 등이다.”, 프랑스 지식인 선언문, 『시대정신』, 1999, 5·6월, 제4호, 216쪽.
- 3) 북한은 1980년대 후반으로 먹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1500만 톤의 알곡고지 점령을 내세웠으며, 그 실천방안으로 30만 정보의 간석지와 20만 정보의 새 땅 찾기 등 새로운 농경지를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여 왔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곡물자급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86.8%, 1993년에는 60.2%, 1995년 49.3% 1996년 32.1%로 계속 낮아졌다.
- 4) 아마르티야 센은 기근은 결코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아니라고 한다 : “기근은 상당히 지엽적인 현상이다. [기근 피해자들의] 소득을 재창출하거나 그들에게 정상적인 식량 소비를 재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방지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그렇게 많이 들 필요는 없다”. 센(Amartya Sen), 박우희 옮김,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2001, 221-2쪽. 또한 “기근과 관련된 높은 사망률은 체력 저하, 위생상태의 파괴, 인구이동, 그리고 풍토병의 전염으로 인한 확산 등의 결과이다. 이러한 것 역시... 공공정책을 통해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잘 계획된 소액의 공공지출로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같은 책, 222쪽.
- 5) 농업시스템의 문제로는 무엇보다도 농업집단화체제의 문제점, 에너지 난에 따른 비료, 농약,

주의적 수령중심체제의 무책임성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동안 많이 있어 왔다. 여기서는 그에 더하여 아마르티야 센의 분석에 의지하여 북한의 정치체제의 결함이 대기근 사태의 주요원인이라는 점을 보충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센은 “현대세계의 기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지 식량과 인구 사이의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폭넓은 방식으로 기근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초점은 단지 문제가 되는 나라의 식량의 양이 아니라 경제적 힘과 충분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가족과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에 있다.”고 한다.⁶⁾

따라서 경제적 부의 풍요만이 기근을 방지하는 원천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식량수급에 대한 개인들의 권리(entitlement)과 구매력 그리고 기근에 대비한 적절한 위기관리대책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적정한 체제만 갖추어지면 기근은 발생하지 않고, 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피해는 어렵지 않게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센은 이를 결국 정치체제의 문제로 연결시킨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더 나쁜 식량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잘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⁷⁾ 센은 공개적인 비판의 장치, 선거, 야당의 존재 그리고 언론의 기능을 중시한다. 그러한 민주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기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센은 기근이 발생해도 정치지배자들은 죽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기근은 정치적 무책임의 결과임을 강조한다.⁹⁾ 센은 민주주의의 가치로서 특히 진실된 정보의 유통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자유로운 언론과 활발한 정책 반대는 국가가 기근에 의해 위협받는 것을 조기에 경고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센은 3천만명이 아사한 중국의 대약진운동기간 동안의 대기근에서 마오쩌뚱이 민주주의의 정보적 역할을 긍정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다.¹⁰⁾

농기계 등 농자재의 부족, 삼림의 남벌에 의한 토지의 대규모 침식 그리고 주체농법의 폐해 등이 지적된다. 주체농법이란 엄밀한 과학적 토대가 없이 김일성 교시에 의한 교조주의적 생산방식이다. 즉 김일성이 생전에 농촌 현장지도를 하면서 언급한 하나의 훈시들인 것이다. 그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벼, 옥수수, 담배 등 모든 농작물을 가급적 밀식(密植)시키는 것이다. 즉 한정된 토지에 수확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밀식이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밀식은 농작물의 통풍 저해, 광합성 작용저해, 병충해 방제 미흡 등의 예해가 많아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 6) 위의 책, 212-3쪽.
- 7) 기근은 인도, 보츠와나, 짐바브웨와 같은 아주 가난한 국가들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때때로 가난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식량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감소를 나타냈으며, 몇몇 비민주 국가들보다도 인구의 상당부분의 구매력 붕괴가 더 심각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독재 국가에서는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던 반면에,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더 나쁜 식량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피하곤 했다. 이것은 시기 적절하고 광범위한 기근 방지 정책 때문이었다.” 위의 책, 233-4쪽.
- 8) “수단과 에티오피아의 기근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 많은 국가들의 기근은 독재 국가들이 지니는 정부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에서 생겨났다. 이것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위의 책, 234쪽.
- 9) “민주주의와 기근방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세계 여러 곳에서 기근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지만, 지배자들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 왕과 대통령, 관료와 사장, 구 지도자와 사령관들은 결코 기근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 만일 선거와 야당, 자유로운 공개 비판 정치가 없다면 권력자들은 기근 방지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다.” 위의 책, 236쪽.
- 10) “1958-1961년 중국의 기근 동안에는 1943년 인도에서의 대기근 때보다 10배 가량 많은 3천만명이 죽었다. 소위 “대약진운동”은 거대한 실패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3년 이상 이와 비슷한 파괴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했다. 그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정부는 통제되었던 신문들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는 야당으로부터도 압력을 받지 않았다. 자유로운 뉴스 제공의 결여 역시 정부의 정치적 선

이와 같은 센의 논의는 지극히 평범하여 자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센이 북한의 경우를 직접 연구하여 내놓은 결과가 아니므로 북한의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본 이른바 '주체농법'의 실패를 생각할 때, 그리고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희소한 식량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못한다는 의혹¹¹⁾을 생각할 때, 북한 경제의 추락과 대기근의 원인으로 북한 정치체제의 실패 곧 책임정치의 실패를 지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¹²⁾

2.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의 인권상황과 그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와 있으며, 또 대체적인 상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어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도록 한다.

북한 인권상황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은 바로 1990년대 이후 기근으로 발생한 대규모 아사사태일 것이다. 그 피해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90년대 후반에만 많게는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¹³⁾ 물론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식량난뿐 아니라 식수의 오염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한편 식량난은 대다수의 아동들의 발육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대기근의 참상 자체가 북한 인권상황의 처참함을 응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나, 그러한 식량난이 조속한 시일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다.¹⁵⁾

전이나 베이징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관리들의 장밋빛 보고들에 의해 정부를 잘못 인도했다. 흥미롭게도 급진적인 희망과 신념을 가지로 "대약진운동"을 추진했던 마오조차도 일단 뒤늦게 실패를 깨달은 후 민주주의의 정보적인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다." 위의 책, 236-7쪽.

- 11) 외부 관측통들은 농산물을 활용해 제대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즉 부족한 곡물을 국수와 같이 형편에 비해 사치스러운 음식을 계속 만드는 데에 쓰거나, 노동당원이나 정부관료가 집중적으로 사는 도시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보급한다거나, 군사비축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Marcus Noland, 「북한 기근해소를 위한 제언」, 『월간 통일경제』, 1999년 2월 제50호, 92쪽.
- 12) 센의 분석에 의해 북한의 기근을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Noland, 위의 글, 92쪽을 들 수 있다. Noland는 정치체제의 결합보다도 특히 지방의 농민계층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권원과 구매력의 붕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 13) 90년대 후반 북한의 아사자 수의 추정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99년 9월 북한 주재 세계 식량계획 대표인 데이비드 모턴(D.Morton)은 95년 이후 북한에서 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만명 내외라고 밝혔다. 99년 2월 한국정부는 북한의 사회안정성(현 인민보안성)의 내부문건을 인용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50-300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94년 이후 아사자의 수를 3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1, 91-2쪽에서 참조. 한편 최근 최수현 북한 외무성 부상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회의에서 90년대 북한의 기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9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22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기근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북한의 고위 관리가 식량난에 대한 실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2001년 05월 16일 01면(43판)
- 14)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럽연합(EU)은 공동으로 1998년 가을 3주에 걸쳐 18개 팀으로 나누어 북한 내 8개 지역에서 7세 미만의 어린이 1800명을 무작위로 추출, 북한지역의 영양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7세미만의 어린이의 62%가 장기적인 영양부족으로 발육부진 상태에 있으며, 16%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인권백서』, 앞의 책, 93쪽
- 15)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현지조사에 의한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도 북한은 심각한 가뭄과 태풍 피해로 식량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쌀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31%가 감소했으며, 옥수수 수확량도 23만여 톤이 감소했다. 따라서 2000-2001년도에도 상업적 수입이나 차관 등을 제외하면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116만여톤으로 추정된다. 위의 책, 95쪽.

다음으로 보통 시민적·정치적 권리라는 차원에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좋지 않다. 권리 주의적인 유일사상체제 속에서 정치적 자유와 사상,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미약하며,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법절차를 위한 형사적 권리와 제도도 미흡하고, 주민 간의 계층적 지역적 차별 및 장애인과 여성 등에 대한 차별대우가 존재하고, 참정권은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에¹⁶⁾ 대한 박해와 공개처형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¹⁷⁾

한편 북한은 이전부터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다 강조하였고, 특히 완전고용,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북한의 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56조, 제72조).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무상치료제'도 경제난에 기인한 재원부족으로 거의 마비 상태라고 한다.¹⁸⁾

3. 개입의 요청과 한계

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북한 주민의 참담한 생활상과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의분(義憤)을 일으키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 1999년 3월에는 프랑스 지식인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서를 발표하였고,¹⁹⁾ 그에 이어 한국의 인사들이 그것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⁰⁾

기존의 보수 언론과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진보진영의 인사였던 이들도 북한민주화운동에 앞장서는 경우도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이트들도 여러 개 생겨났다.

나아가 국제법 혹은 국제인권법을 전공하는 학자들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인권법의 차

16)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및 자강도 등 동북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2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정치범수용소의 전체 규모와 정치범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행 북한 형법상 정치범의 처벌 조항으로는 제44조 '국가전복음모죄', 제46조 '반동선동선전죄' 그리고 제47조 '조국반역죄'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전복음모죄'는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를 처벌 토록 하는 것인데, 주로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이 이 조항으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유배되고 있다고 한다. '반동선동선전죄'는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악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해외정보유입을 차단하고 내부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조국반역죄'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일과 같은 조국 반역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국외 탈주자가 늘게 됨에 따라 동 조항에 의해 처형되거나 혹은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용되는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위의 책, 116-7쪽.

17)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인권탄압상황은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이창하 조선인권연구협회 서기장은 1995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단을 초청하여 '사리원교화소'를 방문케 하였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면위원회 조사단원에게 북한의 전체 죄수는 800-1000명이며, 이들은 3개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정치범 240명은 '형산재교화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탈북자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책, 119쪽.

18) 위의 책, 99쪽 이하 참조.

19) 프랑스 학계·언론계·사상계를 대표하는 지식인 20명은 지난 10일 북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중앙일보, 1999년 03월 12일 19면(10판)

20) 김상철 변호사 등은 19일 '북한주민 인권 및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김병수 연세대 총장, 심윤종 성균관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총장 등 70여 명이 서명했다. 중앙일보, 1999년 03월 20일 25면(10판)

원에서 거론하고 그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의 당위성과 그 법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많은 민간단체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봉사와 지원을 위해 빌벗고 나서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이른바 북한민주화운동론²¹⁾이다. 이는 극단적으로는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을 도탄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최근 국제관계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적 개입”의 논리다. 그들은 국제기구나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에 관해 국제법학자들은 대체로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그 셋은 민간기구에 의한 지원과 문제제기이다. 민간기구는 북한 주민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북한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관여의 한계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을 구출하자는 구호는 우리의 정의감을 자극하고, 도덕감을 환기시킨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절박하고 심각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국제적 간섭이 당연히 정당화되고, 또 항상 바람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이웃 간에 혹은 한 국가법질서에서) 악행과 비참에 대한 비판적 규정과 그에 대한 간섭의 실효성 및 정당성의 문제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반세기 전에 끔찍한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상태는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 또한 한반도는 세계 열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에는 아직 미군이 주둔하고, 비상시 우리 군의 작전권도 미군의 손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과 체제에 대한 간섭은 참으로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어떤 관점과 방책이 중오를 부추김이 없이, 평화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선린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집단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 진지하게 숙고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내에 다수의 논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방안들은 대체로 일방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선 일각에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분노와 환멸을 표명하며 북한 수령체제의 타파를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저항권의 발동론,²²⁾ 북한민주화운동론 등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본다면 이른바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과연 그러한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²³⁾ 비록

21) 열성적이고 진지한 주장으로 이승규, 「왜 북한민주화운동이 절박하게 요구되는가」, 『시대정신』, 1999년 9·10월호, 16-51쪽.

22) 법철학계의 원로인 심재우박사의 주장이다.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여 북한의 독재체제를 민주체제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북한상황으로서는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그러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심재우, 「북한의 인권 현황과 우리의 대처방안」, 『통일문제연구』, 강릉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제15권 1호, 1999, 27쪽, “그러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것을 바꿀 것인가? 밖의 힘으로 인한 흡수통일이 불가능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북한 안의 힘으로 인한 저항을 통하여 스스로 바꾸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 ... 그렇다면 남겨져 있는 가능성은 저항권을 발동하는 길밖에 없다. ...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따른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치원에서부터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서 국민의 자유의식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이 자유를 외치며 움직일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항권에는 국민의 움직임이라는 방식 외에 폭군살해라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 위의 글, 28-29쪽.

23) 조시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화를 깜과 동시에 국제평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인도적 개입은 종종 더 심각한 인

현재 북한 사회가 억압과 비참함으로 얼룩져 있다고 하여도, 북한의 '주권'²⁴⁾을 침해하고,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현재 한반도의 사정상 더 큰 위협과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사태가 보다 악화되어 북한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 새로운 정치적 세력이 일정한 대표성을 획득하여 투쟁에 돌입하고 또 그로 인한 혼란으로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면 그 때에는 인도적 개입이 정당하고 또 필요한 것일 수 있을 것이다.²⁵⁾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북한의 통치질서를 존중하면서 인권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주권은 인권보호의 요청과 배치되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의 보호막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²⁶⁾ 즉 주권은 집단적 인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²⁷⁾ 한 국가의 정치적 일체성의 의의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²⁸⁾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부적절해 보인다. 이는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의 내부문제불간섭, 비방·중상의 금지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정쟁의 중지라는 조항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과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형성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권침해를 수반하여왔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인권옹호의 수단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약한 태도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평화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조시현, 「인도적 개입과 국제법 : 인권과 평화의 모순」, 한국인권재단 주최, 『인권학술회의 2001: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그리하여 조교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에 반대한다.

24) 물론 현행 헌법상 북한은 하나의 반란단체에 불과하고, 또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남과 북이 같이 유엔에 가입하였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수교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국제적 차원에서는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일종의 '주권'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 참고로 정치적 공동체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자 왈저(Walzer)는 외부의 물리적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분리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유형, 외부세력에 의한 선행된 부당한 침략을 저지하는 유형, 집단학살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구하는 인도적 개입의 유형을 들고 있다.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제3판, New York, 2000, 90쪽. Joseph S. Nye, Jr. 양준희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2000, 225-6쪽도 참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개입은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코소보사태에 대한 나토의 개입이다. 그것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차원 만이 아니라 인도적 개입의 효용성 자체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던져준 사건이었다. 코소보에 대한 나토의 공습에 대한 부당성은, 조시현, 앞의 글에 잘 나와 있다. 아울러 또 하나의 비판적 입장으로는 박기갑 편저,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24쪽 이하 참조. 기타 일반적인 분석으로서, 타리크 알리 외, 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 『전쟁이 끝난 후 - 코소보를 둘러싼 나토의 발칸 전쟁이 남긴 것들』, 이후, 2000 참조.

26) "개인의 권리는 정치적 과정과 사회적 조건에 의존함이 없이 인격과 도덕적 주체성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권리의 시행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단지 권리의 목록을 선포하고 난 후 비로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무장인력을 찾게 되어서는 곤란하다. 권리는 집단적으로 승인되는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권리들이 승인되는 과정은 정치적 장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과정인 것이다." Michael Walzer, "The Moral Standing of States: A Response to Four Critics", *Philosophy & Public Affairs*, 1980. 9권 3호, 226쪽

27) "인권을 국가의 주권보다 앞에 놓은 오류는 그 양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도시키고 있다. 각국이 주권을 유지할 때에만 인민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국주의적 침략과 억압에 심대하게 시달려 온 제3세계의 인민들은 주권을 잃는 것은 인권의 향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남에게 짓밟히는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의 역사와 현실은 주권이란 인권을 실현시켜주는 토대이며, 주권을 방해하는 것은 곧 인권에 대한 침해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 주권은 ... 참으로 한 나라의 집합적인 인권이라고 할 것이다." "No More of "Human Rights Above State Sovereignty"", *Xinhua News Agency* 1999.5.26.

28) "개인들이 집을 필요로 하듯이 권리들도 영역을 필요로 한다." Walzer, 앞의 글, 227-8쪽.

인권에 대한 건설적 대화, 즉 한민족의 발전방향에 관한 성찰로서의 인권의 가치에 대한 논의와 공유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일방적 비판이 아니라 남쪽의 인권상황도 같이 검토하는 상호성과 보편성의 관점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상 내정간섭배제의 원칙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또 기본합의서에서 내부문제불간섭의 원칙이 천명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적인 사항의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지, ‘국제인권규약’이나 ‘국제연합헌장’의 위반을 근거로 간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²⁹⁾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심스럽다.³⁰⁾

그러나 한국 주민과 직결된 인권의 문제에 대하여는 한국 정부가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승운, 고상문씨의 납북문제, 동진호 납북어부 송환, 국군포로, 피납 KAL기 승무원 등의 사안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남북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³¹⁾ 이 문제를 성급하게 국제적인 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³²⁾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닌 유엔에 의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정당하며 또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이며, 또 국제인권규약들에도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엔을 통한 인권개선의 방법은 우선 총회와,³³⁾ 안전보장이사회³⁴⁾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유엔인권위원회가 관掌하는 이른바 1235절차와 1503절차, 그리고 인권고등판무관제도 및 인권이사회(B규약위원회)³⁵⁾의 제도 등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이해된다.

29) 김명기, 『북한 주민의 인권과 국제법』, 법서출판사, 2000, 60-67쪽.

30) 다음과 같은 남북 기본합의서 조항들을 생각할 때 그러하다: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정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31) 남북 당국 간에 논의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북한당국이 자의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남한주민은 없다는 주장을 완강히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부당성과 즉시 송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번에 납북자들이 이산가족 상봉의 형식을 빌어 처리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그 중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2) 그러나 제성호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사안과 보편적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유엔의 1235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제교수는 나아가 인권소위원회가 1997년과 1998년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우려를 표명한 거주이전(특히 출입국)의 자유 제한과 표현의 자유 제한, 결사의 자유 제한 등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제성호,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제2호 1998, 400쪽.

33) 유엔총회는 현장 규정상의 일반적 권한에 의거하여 인권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단계로서는 북한인권문제가 총회에 의해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토의되거나 특별보고관에 의한 조사 등이 행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1995년 9월 유엔총회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남북대결의 예가 보여주듯이, 유엔총회의 장에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정부당국자간의 직접적인 대결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태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연대방안」,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16-tckim2.htm>, 2001.7.17일자 참조.

34) 안보리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경우 그 사태에 개입하여 조사 및 권고 그리고 강제조치도 취할 수 있다. 1991년 이라크의 쿠르드족(族) 난민 박해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허용한 안보리 결의 688이 그 대표적이 예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태천도 현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취한다. 김태천, 위의 글. 그러나 제성호는 이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제성호, 앞의 글, 397-8쪽.

35) 이에는 국가보고제도, 국가간 고발제도, 개인청원제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국가보고제도만이

유엔인원위원회는 이른바 “극심하고 명백하며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관행”에 대하여 1235 절차에 의해 직접 나설 수 있다. 즉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특별보고관을 지정하여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503 절차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의 청원에 의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³⁶⁾ 특히 이 절차는 진정이 접수된 이후에는 모든 처리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권피해의 구제보다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당사국과의 정치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한편 인권고등판무관은 당해정부에게 인권침해사태가 진행되어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경고할 수 있고, 또 당해정부로 하여금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관행을 개혁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권문제가 유엔에서 문제되었을 때 초기단계에 유엔의 의사결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³⁷⁾

북한도 유엔차원의 인권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비록 탈퇴를 선언한 적도 있지만, 오랜 동안 미루어 오던 국제인권B규약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97년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차별방지소위원회의 대북 인권개선 결의안이 통과되자 1년 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거주·여행의 자유’를 다시 규정한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보편성과 실효성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엔의 권위와 국제인권규약의 규범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엔은 기본적으로 주권국가들의 모임이고, 국가들 간의 정치적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즉 유엔은 국제 현실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조율하기보다 오히려 그에 의하여 규제되는 면이 많은 것이다.

유엔의 인권기구에 의한 활동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정치적 조건 혹은 적정한 세력균형과 결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³⁸⁾ 그렇지 않은 이상 국제기구의 인권옹호활동은 예컨대 미국의 인권외교가 항상 그와 같은 협의를 받고 있듯이, 미국의 대북한 공세의 일환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민간기구들의 활동을 생각할 수 있다. 사실 국제인권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도 민간기구들의 협력은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문제를 민간기구를 통하여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종종 주장된다. 그러나 민간기구의 역할을 국제기구의 종적 지위 혹은 정부를 대신하는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이다.

민간기구의 지원에 북한 인권개선이라는 조건을 붙이자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이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민간기구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2차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보고서의 검토의 과정에서 민간인권단체들의 참여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간 고발제도는 실제로 시행되기 어렵고, 개인청원제도는 북한이 그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효력이 없다. 김태천, 위의 글, 참조.

36) 1503 절차에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인권침해의 직접 피해자일 필요는 없고, 다만 청원제출자는 그러한 침해에 대해 직접적이고 밀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족사다. 민간단체(NGO)들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Th. Buergenthal, 양건/김재원 옮김, 『국제인권법 개론』, 교육과학사, 1992, 69쪽. 이 절차는 일종의 민중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김태천, 위의 글. 한편 제성호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양심수 및 공개처형자의 가족들이 연대하거나 국내외 NGO가 직접 발의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제성호, 앞의 글, 384쪽, 각주 26).

37) 김태천, 위의 글.

38) 필립 모로 드파르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인도주의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으로 인도주의가 그 임무를 완수하려면, 인도주의 기구들의 활동역량을 보증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조건, 더 정확히 말해 게임규칙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주의는 결코 정치적 해결을 대신할 수 없다”, Philippe Moreau Defarges, 문경자 옮김, 『내정간섭』, 한울, 2000, 100-1쪽.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민간기구들은 자신들의 지원에 대해 당연히 그러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적십자회처럼 전적으로 인도적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또 그 나름대로 북한 지원에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가 공적 지위에서 그리고 자율적인 활동으로서 북한체제와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충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한 일이다. 예컨대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이 보편적인 인권의 함양과 신장에 노력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은 그들의 일관된 척도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또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이 자신들의 봉사활동의 올바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북한 체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지원활동을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권의 신장에 진력하는 것도 아니고, 또 봉사와 지원활동에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또 인도적 지원과도 결부되지 않은, 오로지 북한체제와 인권상황을 성토하는 활동은 인권옹호를 빌미로 한 정치적 공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III. 북한에 대한 간섭에 붙이는 단서

앞서 우리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과 간섭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국제정치적 조건과 그것을 감안하는 규범적 접근이 필요함을 얘기하였다. 이 글은 그간의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하에서는 그에 관하여 두 가지 사항, 즉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과 인권문화의 공존과 관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북한의 인권상황과 전쟁의 공포

일찍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언론, 신앙, 끌주림 및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4대 자유를 천명했고, 이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을 이루었다. 그 가운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분개하는 이들은 대체로 앞의 3가지 자유의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오히려 전쟁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가장 중요한 인권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2000년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시민권규약의 제2차 정기보고서³⁹⁾에서 “공격적 전쟁, 특히 핵전쟁을 인류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인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한반도로부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확보하며,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고 말한다.⁴⁰⁾

북한이 핵전쟁의 위험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억압적인 인권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대립의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39) 북한은 1981년 9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래 1983년과 1984년에 1차 정기보고서 및 추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2차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미루어 오다가 2000년 3월 제6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은 1990년대 들어 유엔인권위와 유엔인권소위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두 차례(1997년 제49차 및 1998년 제50차 회의)에 걸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었다. 이에 북한은 유엔인권소위의 결의안에 대해 국가주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1997년 8월 국제인권규약 B규약으로부터의 탈퇴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유엔인권위는 동년 10월 북한의 탈퇴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40)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시행에 관한 북한의 제2차 정기보고서」, CCPR/C/PRK/2000/24May2000 제32항.

실제로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미국의 핵공격의 위협에 시달려 왔다. 6.25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핵공격을 고려에 넣었었고,⁴¹⁾ 휴전 후 1957년부터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핵무기를 남쪽에 들여놓기 시작하였다.⁴²⁾ 나아가 1976년부터는 팀스파리트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1983년에 이 전쟁훈련은 미국이 동맹국과 실시하는 현장훈련으로서는 최대규모가 되었다.⁴³⁾ 그리고 1980년대의 레이건 정부는 이를바 '수평적 확대전략'으로서 북한을 핵공격의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⁴⁴⁾ 1994년의 북한의 핵위기 당시에 북한과 미국은 다시 전쟁 일보직전까지 이르렀다. 당시 한반도는 정말로 불바다의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하였던 것이다.⁴⁵⁾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와 2000년 조명록 차수의 방미에 의한 북-미 공동성명 등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전쟁위험은 상당히 불식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되고, 부시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한반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⁴⁶⁾

41) 마틴 하트-랜즈버그(Martin Hart-Lansberg), 신기섭옮김,『이제는 미국이 대답하라 -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당대, 2000, 181쪽『미 대통령 트루만은 1950년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탄의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였다. 또 그는 국제연합의 승인을 기다리거나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트루만은 조립하지 않은 원자탄을 공군 수송기로 한국 해안에 옮기도록 명령하는 데까지 갔다. 그리고 폭탄 투하를 위해 북한 상공으로 출격하는 연습도 실시되었다.』

42) 미국은 1957년 휴전협정 규정에 얹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해 하반기에 핵미사일과 핵폭탄을 남한으로 들여왔다. 1958년 2월에 한 군사감자는 이 핵무기배치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런 공개화의 저의는 워싱턴이 핵무기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할 의사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명확히 전달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 또한 60년대 내내 미국은 파괴용 핵무기와 핵탄두를 장착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남한 핵무기 저장고에 추가했는데, 이 무기는 비무장지대 근처에 전진 배치되었다. 위의 책, 221-2쪽.

43) 1971년 미국은 남한에서 미군 일부를 철수시켰지만 대신 닉슨 대통령은 한국 군수산업의 지원과 핵무기를 통한 지속적인 보호를 약속했으며 또 1976년에는 팀스파리트 전쟁예행연습을 시작했는데, 이는 새로운 한국전쟁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이었다. 그 한 가지 예가 1976년 8월에 비무장지대에서 상호 신경전이 격화되어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 두명이 북한군에게 격살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흘 뒤 미국은 핵무기 비상대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사동원으로 대응했고, 미군과 남한군이 대거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나무들을 잘라냈다. 이 비극은 북한이 미국을 도발하기 위해서 벌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팀스파리트 훈련으로 예민해진 최전방의 북한 군인들이 독자적으로 취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일성은 이 사고에 대해 사과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위의 책, 223쪽. 당시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대하여는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뉴스워크 한국판 뉴스팀 옮김,『두 개의 코리아』, 1998, 중앙일보사, 79면 이하 참조.

44) '수평적 확대전략'이란 레이건 시절 미국의 대소련 공격적 군사전략으로서 소련이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공격을 하면 소련의 이해가 걸려 있는 다른 지역을 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하트-랜즈버그, 앞의 책, 224쪽.

45)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은, 돈 오버도퍼, 앞의 책, 283-308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한편 보다 심층적인 분석으로는 리언 시걸(Leon V. Sigal), 구갑우/김갑식/윤여령 옮김,『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평론, 1999 참조. 당시 전쟁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폐리 전 미국방장관도 최근 그에 대하여 다시 증언하였다. 폐리는 2001년 6월17일 폐막된 제주 평화포럼에서 '위기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는 '한국 어디로 가는가(Korea...Quo Vadis?)'라는 제목의 특별연설에서 "당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는 전쟁 비상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동안 군 지휘자들을 만나 전쟁계획의 모든 세부상황을 검토했다. 파견할 육군·공군부대를 결정했고 이동방법·도착시간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한편 기습공격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했다. 검토 결과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하겠지만 한국군, 미군, 한국 국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나와 군지휘관들은 주한미군을 강화하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을 수만명 증원하는 계획을 입안했고, 주한 미대사관에 민간인 철수계획을 준비도록 지시했다. 종양일보 2001년 06월 18일 03면(10판).

46) 흔히 폐리보고서에 대응하는 것으로 말해지는 아미티지(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보고서에는 외교적 노력의 실패시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나의 방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아미티지 보고서 -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장성민 책임편역,『부시행정부의 한반도리포트 - 부시정부 파워 10인의 최신 한반도 관련 보고서』, 252-2쪽. 한편

물론 북한도 이와 같은 군사적 압력과 대립 속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하여 폭력테러나 미사일 개발 등으로 대응하여 왔고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확한 군사력의 비교치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들어서 북한의 체제 실패로 말미암아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과 주한미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전쟁의 위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수세에 몰려 있는 측은 북한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군부 중심의 권위주의적 체제의 명분은 바로 위와 같은 전쟁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수령중심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는 전쟁의 위기를 벌미로 한 전체주의적 총동원체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선군정치(先軍政治)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군부권위주의 체제야말로 우리 남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회의 인권에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폭압적인 형법이나 정치범수용소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체계화립의 10대원칙등과 같은 공포와 맹종의 정치를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바로 전쟁의 위험성이다.⁴⁷⁾

우리 남한에게 6.25전쟁의 가해자는 북한이고 피해자는 남한이지만, 북한에게 6.25전쟁의 가해자는 미국이고, 피해자는 북한이다. 우리의 현대사가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한 공포로 점철되어 왔다면 북한도 미국의 전쟁위협에 대한 공포로 점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인권상황이 바로 그러한 분단과 안보의 차원에서 가장 심한 왜곡과 축소를 보여 왔듯이, 북한의 혹독한 인권상황의 가장 큰 원인도 거기에 있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북한 인권에 대하여 논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의 확보, 그리고 북-미의 관계개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 자신들은 가장 중요한 인권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일리 있는 명분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엄혹한 인권상황에 분개하고 그 혁파를 주장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러한 가혹한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상황에 대하여도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미관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접어두고 단지 북한체제와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과 개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북한체제의 민주화와 인권의 신장에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한반도와 북-미관계의 정치역학의 소용돌이에 오히려 악용되는 결과를 빚을지 모른다.

2. 관용의 원리와 인권의 개념

물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고 하여 북한의 체제가 저절로 민주화되고, 인권상황이 호전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북한의 통치질서와 법체계가 개선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문화적 기틀이 마련되지 않는 한, 평화정착 및 화해와 협력만으로는 소망스러운 상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체제의 민주화 및 인권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또 그러한 변화의 조건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체제의 민주화가 무엇이고,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들어오면 사정은 그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수송차단을 위한 이른바 “자위권발동”도 거론되고 있다. 위의 책, 250쪽. 한편 지난 5월에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의 설득 및 대북정책의 조율을 위해 방한한 아미티지는 헛별정책의 지지와 북한과의 대화의 재개를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 종래의 비확산정책에 더하여 빙(counter)확산정책을 천명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는 소위 ‘불량국가’들의 대량 살상무기를 무력을 통해서라도 제거해 나갈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7) 경우에 따라서 북한 군부 강경파들은 제한적인 전쟁을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지속시키는 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는 이라크에서 후세인의 지배력이 미국등의 폭격에 의해 오히려 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다.

렇게 간단치 않다. 북한은 서구의 인권 개념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고유한 ‘우리식 인권’ 혹은 ‘자주적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⁴⁸⁾ 북한의 인권관은 서구의 인권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있다.⁴⁹⁾ 북한에서 인권은 사회주의의 당파성에 기초하고, 또 수령중심의 권위주의적 지배질서 속에서 해석된다.⁵⁰⁾ 나아가 북한의 인권은 사회적 책임수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해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 사회보장적 물질적 기초가 중시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은 집단주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⁵¹⁾

이와 같은 북한의 ‘우리식’ 인권관이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인권관은 근본적으로 틀렸고, 따라서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인권개념이 보편적인 것인가 혹은 상대적인 것인가와 같은 인권에 대한 철학적 규정은 본질적인 논점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문제는 이쪽의 인권과 저쪽의 인권관이 서로 크게 다를 때, 어떻게 하면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동시에 양쪽의 우호선린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즉 ‘정당한 인권’보다 인권에 관한 ‘정당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인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이 인권의 보편성보다 당파성을 강조하고, 또 수령의 지도력 속에 인권을 흡수시키는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북한의 인권관을 무시하면서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만약 그렇게 하여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불행한 ‘내부식민지주의’를 낳을지도 모른다.⁵²⁾

이 글은 북한의 집단주의, 권리와 책무의 연결성 그리고 형식적 자유보다 삶의 조건의 확보에 대한 강조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인권의 성격에 대하여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다.⁵³⁾ 이 글은 국제관계에서의 관용의 원리에 대하여 새삼 생각해 볼

-
- 48) 인권은 하늘이 주는 행운도 아니고 더욱이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가 주는 선사도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은 그 어떤 외세의 <압력>이나 <훈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나라가 자기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물질적으로 담보, 보장해 줄 때 실현된다.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이원웅,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대응방안」, 『남북협력과 북한인권』, 경상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 126쪽에서 재인용.
- 49) “각자가 제멋대로 자기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행동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원리”는 참다운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1990년 2월 96쪽, 이원웅, 위의 글, 126쪽에서 재인용.
- 50) “북한의 인권개념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철저히 의존한다. 수령의 10대원칙은 주민의 사상은 물론 주민의 생활까지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부분적인 인권보장의 실행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념에서는 주민의 인권보장을 수령의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문제를 인덕정치와 광폭정치의 부재로 설명하고 있다”. 최의철,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 통일연구원, 1999, 44쪽.
- 51)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1조에는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52) 다음과 같은 글에서 북한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타령은 사회주의 나라들의 반사회주의분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여 나서도록 추동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고유한 우월성을 훼손시키려.. 는 데에 주되는 목적이 있다”. 안명혁, 「미제는 최대의 인권유린자」, 『근로자』 1990년 8월 95쪽. 이원웅, 앞의 글, 125-6쪽에서 재인용. 한편 지역차별의 ‘내부식민지주의’에 대하여는 황태연, 『지역패권의 나라』, 무당미디어, 1997, 105쪽 이하 참조.

것을 제안한다. 현대 정의론의 대가인 롤즈는 국제적 차원의 정의의 기초를 바로 그 점에서 구하고 있다.

롤즈는 여기에서 자유주의의 이념에서 출발하면서도, 그것을 모든 국가들에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롤즈는 오히려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각국의 체제와 문화적 여건을 존중하되,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존중과 협력 및 평화를 위한 상위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것이다.⁵⁴⁾

롤즈는 인권이 가령 인간 존재가 도덕적 개인이며 신의 견지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특정한 종교적 교리 또는 철학적 교리에 의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그 인권은 자유주의적인 편견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로운 국제질서에서는 자유주의적 사회와 다른 이론바 위계적 사회의 인간관이 수용되고 있다.⁵⁵⁾

물론 인권에 대하여 전적으로 문화상대주의에 기울면, 인간존엄의 기초를 상실해 버릴 우려가 크다.⁵⁶⁾ 다만 국제질서의 보편적 규범적 원리로서의 인권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개념과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롤즈는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을 벗어나 다른 이론바 위계적 국가들에서도 고유한 인권체제가 성립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롤즈는 인권을 주권의 한계로 인정하지만, 그 인권은 예컨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자유주의적 색채를 띠는 것이 아니다. 롤즈가 말하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인권이란, 생명의 권리(생명과 안전의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권(강제노역에서 해방, 종교와 사상의 자유),⁵⁷⁾ 소유권(개

53) 1993년도 유엔 세계인권대회에서의 논쟁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당시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아시아적 인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콕선언을 채택하였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들 수 있다. 제5항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 원칙과 아울러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이라는 원칙 그리고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인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제8항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며 동시에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규범체계의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진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유엔세계 인권대회자료집』, 1994. 58쪽. 한편 이에 관하여 정경수·김정훈,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의 의의와 전망」, 박기갑 편저, 앞의 책, 83쪽도 참조. 그리고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는 사회과학원, 『사상』, 1996년 겨울호, 특집 동아시사의 성장과 인권 그리고 김대중·리콴 유 외,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1999년 참조.

54) 롤즈는 국제적 정의란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명백하게 나는 만민의 대표들이 평등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가정했다. 심지어 적정수준의 비자유적 사회들의 정의관이 그들 구성원간의 기본적인 불평등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만민간의 평등한 입장은 보장되어야 한다.” 롤즈(J. Rawls), 장동진 옮김, 『만민법』, 이끌리오, 2000, 115쪽.

55) 롤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인들이 먼저 시민들이어야 하며, 평등한 시민으로서 동등한 기본권을 갖는다는 자유주의의 이념의 수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계적 사회의 인간관은 개인들을 그들 각각의 집단에서 책임있는 협력적인 성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와 책무와 일치되게 자신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행동한다”. 위의 책, 109쪽. 또한 롤즈는 1인1표가 인권의 표준적 척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같은 책, 119쪽.

56) 예컨대 아시아적 가치 등과 같은 특수성의 강조는 종종 억압적이고 구태의연한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려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태평화재단이사장 시절에 리콴 유의 아시아적 가치의 옹호론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Is Culture Destiny? :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 *Foreign Affairs*, 1994년 11·12월호)에서, “... 가장 큰 장애는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변명자들의 저항이다. ... 문화는 반드시 우리의 숙명일 수만은 없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숙명인 것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대중, 『문화는 숙명인가』, 『아시아적 가치』(앞의 책), 64쪽.

57) 롤즈는 충분하고 평등한 종교·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롤즈의 만민법체계에서는 국가종교도 인정되고,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에서 종교에 따른 불평등까지도 어느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체제가 과연 정의로운가? 롤즈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것

인적 소유권)⁵⁸⁾, 형식적 평등권(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다루어야 한다) 등이다.⁵⁹⁾ 다른 부분에서 롤즈는 만민법의 규제원리인 인권의 범위를 '절실한 권리'들로서 제한한다. 즉 노예와 농노의 신분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그러나 평등한 자유는 아니다),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로부터의 인종의 보호 등과 같은 것이다.⁶⁰⁾ 롤즈는 위와 같은 인권들을 특별히 자유주의적이라든가, 서구의 전통에 고유한 것이라고 배척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롤즈와 같이 인권의 가치에 대하여 깊이 인정하면서도 국제질서에서의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임한다면 북한의 인권문제에서도 보다 건설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남측은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인권'이 터무니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⁶¹⁾ 또 북측도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소중함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일찍이 냉전의 대립이 첨예하던 70년대에도 동서진영 간에도 기본적 인권, 이를테면 사상, 양심, 종교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⁶²⁾

IV. 결 - 북한 체제 변화의 방향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북한의 체제를 실패로 규정하고, 그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간섭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확립에 대한 논의가 없이 북한의 인권상황만을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또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관용의 원리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를 해 왔다. 이는 결국 북한 체제와 인권의 문제를 긍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외부적 간섭보다도 자율적인 개선의 가능성은 긍정하고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현실성이다. 북한의 유일수령체제에서 과연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와 민주주의는 양립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글은 그 자체적인 개선과 발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체제붕괴의 필연성만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권보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 사상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단체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보장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실로 어려운 문제이나, 롤즈가 말한 "위계적 협의체(hierachial consultation)" 국가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⁶³⁾

들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롤즈, 앞의 책, 122쪽. 롤즈는 정의로운 '국제질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정의로운 '국가질서'의 조건으로서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의 입장도 그렇다.

58) 이는 자본주의적 사소유권 절대성의 원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인권의 차원에서 거부됨을 말하는 것이다.

59) 롤즈, 앞의 책, 107쪽.

60) 위의 책, 128쪽.

61) 북한의 통치질서도 이미 롤즈가 국제질서의 필요조건으로 말하는 기본적 인권들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 헌법 제64조 제1문은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2) 이는 전 유럽을 포괄하는 유럽안보회의(CSCE)를 탄생시킨 1975년의 헬싱키 선언에서 천명된 것이다. 주의할 점은 그 헬싱키선언은 평화와 협력의 조건하에, 즉 군축과 경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바탕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점이다. 김병로,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통일문제연구』, 강릉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제15권 1호, 1999, 이러한 모델은 현재 북한과 EU사이에 진행되는 대화에서도 발견된다.

63) 롤즈가 말하는 적정한 수준의(decent) 협의적 위계사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첫째, 이 사회는 공격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이 사회는 다른 사회들의 종교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포함하여 이들 다른 사회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념을 추구한다. 2.두번째 기준은 세부분으로 이루어진다. (a)첫번째 부분은 적정수준의 위계적 국민의 법체계는 공

그러한 체제는 비록 서구적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체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민주적 협의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공동선을 추구하며, 법치주의가 보장된 사회이다. 롤즈는 서구 자유주의적 사회가 아니라도 그러한 체제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확보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롤즈는 그러한 국가의 예로서 가상적인 이슬람근본주의의 체제를 들고 있다.⁶⁴⁾

인권은 비록 현재 서구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달성되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전유물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의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적인 논쟁이 시사하듯 문명간의 대화와 선의의 경쟁이야말로 인류의 장래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북한은 이미 수십년 간 권위적 사회주의의 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북한의 현재 체제는 실패하였지만,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단정지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북한 자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인권문화와 민주주의의 모델을 기대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본다. 물론 현재와 같은 사회시스템의 붕괴와 맹목적 개인숭배적 체제는 그대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주체사상의 카리스마를 해치지 않으면서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⁶⁵⁾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은 어떤 우월의식이나 경멸감이 아니라 연대와 연민으로써 이뤄져야하고, 북한주민들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북돋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북한의 민주화운동 혹은 폭군방벌론과 같은 저항권의 행사로서 북한 주민은 자신들의 진정한 주권을 수립하고 발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성공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쟁취해 냈으므로써 세계무대에 당당한 구성원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너무도 위험한 것이며 오히려 끔찍한 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였고,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적 사회주의에 대하여 승리하였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사회와 문화가 과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가, 그리고 서구의 문명은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고 그 인권상황을 개탄하는 마음에는 북한 주민의 역량을 무시하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의 잣대에 맞게 일방적으로 개조하려는 충동, 즉 내부식민지주의적 발상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 주민이 성취해 온 역사와 북한 주민이 간직해 온 전통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과연 북한 그들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온전히 감안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무의식적 의식구조 속에서의 어떤 지원과 운동이 북한 주민을 참으로 인권의 주제로서 세우는데 기여 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⁶⁶⁾

동선과 인권의 개념에 의해 사회협력의 개념을 포함하여야 한다. (b)두번째 부분은 적정수준의 국민의 법체계가 그 국민의 영토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선의의 도덕적 의무와 책무의 주체로서 승인된다. (c)세 번째 부분은 법이 공동선의 정의관에 의해 진실로 유도되도록 법체계를 운용하는 판사들 및 다른 관료들에게는 성실하고도 합당한 신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4) 이 근본주의 국가는 결코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국가가 아니다. 소위 성전(聖戰)이라하고 하는 지하드도 여기서는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65) 이를테면 '유교사회주의'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수령체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닮아가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 새로 추가된 전문에는 김일성을 국가의 "시조"로서 위치지우고 있으며, 통치이념으로 "이민위천(以民爲天)"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일위원장의 통치방식으로 찬양받고 있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도 바로 유교적 덕치(德治)와 유사한 개념이다. 물론 이러한 유교지향성이 보통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차원으로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유교사회주의가 보통 인식되듯이 권위주의 통치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에서 회망하는 유교사회주의란 효제충신(孝悌忠信)에 대한 강조는 당연할 것이나, 그보다 중요한 것으로 사회주의적 가치와 법치적 인권보장의 유교적 가능성이 다. 즉 의주리종(義主利從)에 기반한 사회경제원리와 인치(人治)가 아닌 도치(道治)에 의한 법치주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66)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조차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미군철수

자유민주주의의 세계관을 잠시 벗어 놓고 숙고해보면, 충분히 다른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국이 그렇고,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가장 두려운 상대로 묘사된 이슬람 문화가 그렇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대체로 아직 뚜렷한 형태를 취하기보다 저항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대안체제로서의 성취의 도정에 있는 이란과 같은 나라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져 북한의 지도자가 어느 날 이란 대통령 하타미와 같이 세계를 향하여 자국 이념의 정당성과 그 발전의 자신감을 당당하게 선언⁶⁷⁾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를 꼽았고(좋은 벗들 통계조사 66.1%), 또 남한에 비해 북한의 복지제도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위의 통계조사 24.5%)(좋은 벗들 워음,『북한 사회 -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정토출판, 2001, 118, 124, 136, 150쪽)는 사실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67)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개인이나 사회는 이슬람 체제가 그들에게 합리적인 필요를 충족해 주고,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혁신과 약속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종교를 함양시키기 위한 최상의 원칙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축복을 구가하는 한 사회는 진정으로 매력적인 이슬람의 이미지와 혁명정신을 잘 반영하는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사실상 오늘날 현대세계에서 경쟁력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타미(Seyyed Mohammad Khatami), 이희수 옮김,『희망과 도전 - 이란 대통령 모hammad 하타미의 문명론과 서구관』, 주류성, 1999, 112쪽(대통령 취임사 가운데). "정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문명간의 대화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긴장을 야기시킬지도 모르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존중해 주는 어떤 나라와도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국익의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지가 우리를 강제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같은 책, 116쪽.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1. ‘북한문제’, 북한의 인권, 북한 체제

○ 소위 ‘북한문제’

- 북한핵위기: 북한 핵개발 관련 북미갈등에 따라 한반도 불안정 및 전쟁 위기;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고 동북아 지역을 안보 차원에서 불안정하게 만들
- 북한경제위기: 사회경제체제 마비에 따른 주민 생존권 위협 및 체제 붕괴 가능성;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지연; 난민 발생 및 체제 붕괴위험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증대
- 북한핵위기와 북한경제위기는 북한 자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문제’ 또는 ‘문제적 상황’임

○ 북한의 인권

- 북한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하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주민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거나 못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는 경제체제가 완전히 붕괴됨으로써 주민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 인권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포괄적 개선계획이 필요함; 인권상황개선은 정치·경제체제 변화와 사회·경제적 개발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 북한 체제에 대하여

- 주체사상, 수령론 등에 기초한 전체주의적 당-국가사회인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이념 자체는 이미 의미를 상실하였음
- 북한의 정치·경제체제 자체가 완전한 기능장애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임
- 냉전체제 하에서 형성된 지배이념과 지배원리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는 북한 체제 자체의 유지를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 내부의 ‘인권위기’를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한 자결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합리화하고 있음

○ 최근 북한 지도부의 변화에 대하여

- 북한 지도부는 인권 관련 비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경제위기와 체제기능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음
-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런 차원에서 유럽연합과 인권대화를 가졌음
- 미국이 2002년 10월 북한핵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북미갈등을 고조시키자, 북한 지도부는 폐쇄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로 복귀하였음

2. 북한의 인권과 남한 시민사회

- 남한 사회의 민주화 이전,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남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언급되었음
 - 체제경쟁원리가 작동하는 분단체제 하에서 인권은 안보에 비해 열등재로 취급되었으며(안보제 일주의), 인권억압의 상호의존메커니즘이 작동하였음
- 1980년대 말 남한 사회에서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일어나자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과 북한 내 인권 억압 상황을 ‘홍보’하는 반작용도 함께 나타났음
 - 대북관을 둘러싼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은 분단체제 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역사(과거), 정치(현재), 가치(미래)가 서로 복잡하게 얹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인식이란 일종의 ‘노선투쟁’의 형태를 띠게 되었음
-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기아상태가 발생하면서 남한 시민사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음
 - 체제정당성과 인권상황과 관련한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북한 주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음
 - 남한 시민사회 내부의 일부 그룹은 북한의 기아상태를 북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주요 근거로 삼기 시작함
-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지도부의 대남·대외 적대정책이 변하지 않고 유지됨에 따라, 남한 사회 내부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발생함
 - 남북정상회담 이후 ‘폐주기논란’과 ‘북한불변론’은 대표적 사례임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문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도 발생함
-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쟁점
 - 원인: 북한의 정치·경제체제 속성 / 외부의 대북 적대정책
 - 현황: 생존권 우선 / 시민적·정치적 권리 우선
 - 대응책: 조용한 외교(인권정치 비판) / 공론화 및 압박(공세적 인권정치)
 - 인도적 지원정책: 무조건적 지원 / 인도주의적 원리에 따른 조건부 지원

- 개선방안: 북한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 지원 / 정치·경제적 압박
- 인권문제 제기 의도: 철저한 인도주의인가 정치화인가

- 최근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의 제안에 따른 대북한 인권규탄결의안 통과(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불참 1)와 관련한 견해들; 특히 남한 정부의 투표불참에 대한 논란도 포함
 - 인권절대주의: 남한 정부의 투표 불참에 대한 비판 및 결의안 환영
 - 인권현실주의: 북한 인권문제를 인정하지만 인권 개선을 위한 현실주의 지지
 - 인권정치비판: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적 이용이 오히려 문제

3. 예비적 또는 추가적 고찰

- 인권과 관련한 몇 가지 원칙
 - 인권의 보편성: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등은 근대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음; 정치·사회적 특수성의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할 수는 없음(역으로 인권의 보편성이 정치·사회적 다양성을 부정해서는 안 됨); 인권은 대상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됨(일관성)
 - 인권의 포괄성: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는 절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포괄적 관점에서 인권의 수준(또는 삶의 질)을 평가해야 함; 이런 차원에서 인권의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사회들 사이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며, 한 사회 내에서도 인권 항목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날 수 있음; 특정한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함으로써 다른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나 제도를 부정할 수 없음
 - 인권의 자율성: 인권이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방식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님; 한 사회 내에서 인권은 제도 개선과 의식 개혁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 따라서 인권 향상을 위한 전쟁(목적을 부정하는 수단)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국제적 차원의 제재나 압력도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인권의 독립성: 인권이 다른 가치나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인권은 인권 이외의 다른 이유로 억압되어서는 안 됨

○ 한국의 경험

-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수성이거나 낙후성이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었음;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
- 과거 빈곤과 독재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던 한국에서 인권은 경제성장과 안보의 이름으로 억압을 받았음;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성장과 안보의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것은 거부해야 함; 소위 후진국론이나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
-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한국 시민사회 내부의 인권향상을 위한 민주화운동과 국제인권단체들의 항의·지지방문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두어 왔음; 소위 타율적 민주화론 비판
-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원리는 인권이 아니라 냉전논리 또는 반공주의에 기초한 국익론임; 미국

은 한국에 대해 인권 자체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인권상황을 거론한 적이 많음; 소위 인권경찰국가론이나 ‘정의의 전쟁론’ 비판

○ 몇 가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치적 의도를 떤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정당하지 못하다(인권의 정략적 이용 문제; 소위 인권의 정치화; 인권의 정략적 이용의 판단 근거는 북한과 기타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일관성 없는 판단 기준을 적용)
 - 도둑이 말한 모든 것($1+1=2$, B가 훔쳤다 등)은 사실이 아니거나 믿을 수 없다.
 - 협상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증언은 거부되어야 한다.
- 분단체제의 구조적 폭력(북·미,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을 무시한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편향적이다
 - 정당방위 또는 자결권의 논리
 - 구조적 폭력의 책임자에 대한 무죄선고를 의미하는가
-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 좀더 절박한 상태에서 인권문제 제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 다른 인권상황(한국의 불평등과 사회권 문제,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을 외면했던 행위자(단체 언론, 정치인 등)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 미국식 인권패러다임(자유권 중심,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권문제 제기, 정의로운 전쟁론의 도구화 등)은 정당하지 못하다(cf. 국제연합의 총체적 인권패러다임)

○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며,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 목적과 수단의 일치
-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

4.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활동 방안

○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관련한 몇 가지 고려사항

- 북한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남북관계나 기타 요인들을 고려해서는 안 됨
-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개선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야 함
-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우선순위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
-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북한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충분히 언급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제시해야 함
-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제안이 인권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2003년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에 대한 평가

- 배경
- 내용

○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안

- 포괄적 인권패러다임의 정립
- 북한 인권 실태의 파악 및 분석
-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제안
- 북한 인권상황의 정치적 악용에 대한 예방책 강구